

사학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김용하*

〈 초 록 〉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율,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용어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연금개혁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제1장 서 언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2015년 12월에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학연금제도는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함께 국민연금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특수지역연금 체계로 운영되어왔다.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은 통산 네 번째 개혁으로서 재정안정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그동안의 수차례의 개정은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에 주안점이 있었으나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연금보험료 인상과 함께 연금급여율의 인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연금액의 한시적 동결, 소득재분배 구조의 도입 등 그야말로 제도 전반에 있어서 개편이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매우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데 비하여 사학연금은 2016년 국가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수법안으로 비교적 조용하게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학연금법 자체가 공무원연금법에 연동되어 있는 관계로 대부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되었다.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9회에 걸친 전체회의와 15회의 제도분과소위원회를 열어 다각적인 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이 사학연금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본 논문은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대한 재정적 측면과 후생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연금개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은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 재정추계모형과 수익비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학연금법 개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재정추계 모형 등을 통하여 개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정책목표는 안정된 재원조달구조 마련(sustainability), 세대 내·세대 간의 형평성 확보(equity), 은퇴 후의 적절한 소득보장(adequacy) 등에 있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재정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균형체계로 이행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여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를 정지 혹은 늦추고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있었다. 연금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사학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재정문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제도간, 세대 내·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이므로,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연금 재정안정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의 확보를 함께 고려하였다. 명목 소득대체율(30년 가입기준)을 50% 수준에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

○ 7% → 9% (단계적 조정)

- '16년 8% → '17년 8.25% → '18년 8.5% → '19년 8.75% → '20년 9%

□ 퇴직연금 연금지급률 인하

○ 1.9% → 1.7% (단계적 조정)

- '16년 1.878% → '20년 1.79% → '25년 1.74% → '35년 1.7%

□ 유족연금 급여율 인하

○ 70% → 60%

□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 '22년 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 65세

□ 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 (5년간)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5년간(2016~2020년) 동결

□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 사학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함
-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연금과 구조적 형평성 달성

현행	개혁안
본인 개인 소득(B값)만으로 계산	본인 개인 소득(B값) +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A값) 각 50%씩 반영

□ 소득상한 하향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1.6배
 -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낮춤으로써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

□ 연금지급정지 강화

- 전액정지 대상 확대
 - 현재 교직원으로 재임용시에만 연금을 전액 제한 → 선거 취임 교원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
- 일부 정지 강화
 - 근로·사업소득 있는 경우 최대 1/2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 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

〈사학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구분	개정 사학연금법
기여율(7%)	9%(단계적 인상) * 16년 8% → 17년 8.25% → 18년 8.5% → 19년 8.75% → 20년 9%
지급률(1.9%)	1.7% (5+5+10년간 정률 인하) * 16년 1.878% → 20년 1.79% → 25년 1.74% → 35년 1.7%
퇴직수당(민간39%)	현행 유지
소득재분배(없음)	국민연금 상당분(지급률 1%)에만 도입
소득상한(1.8배)	1.6배
수급요건(20년)	10년
기여금 납부기간(33년)	36년(단계적 연장)
연금지급 개시연령 (⁰⁹ 년 이전 60세 / ¹⁰ 년 이후 65세)	모든 교직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 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 65세
유족연금 (⁰⁹ 년 이전 70% / ¹⁰ 년 이후 60%)	모두 60%
연금액 인상률 (물가인상률)	5년간 동결 ('16~'20)

제3장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 분석

1. 재정효과 분석의 기본가정 및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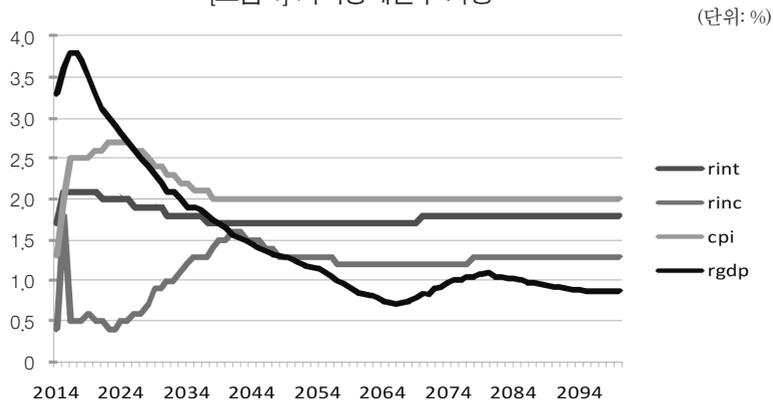
가. 분석모형

사학연금 재정효과 분석을 위한 사학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기초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제도에 대한 사학연금재정추계 모형을 수정하여 개정된 법에 기초한 사학연금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한 다음 기존 제도와 개정 제도를 비교하였다. 재정추계 기간은 2016년부터 2100년까지이며, 사용된 재정추계 모형은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2004년 사학연금공단의 의뢰로 구축한 모형을 근간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나. 거시경제변수 가정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가정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시 전제된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협의회의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림 1] 거시경제변수 가정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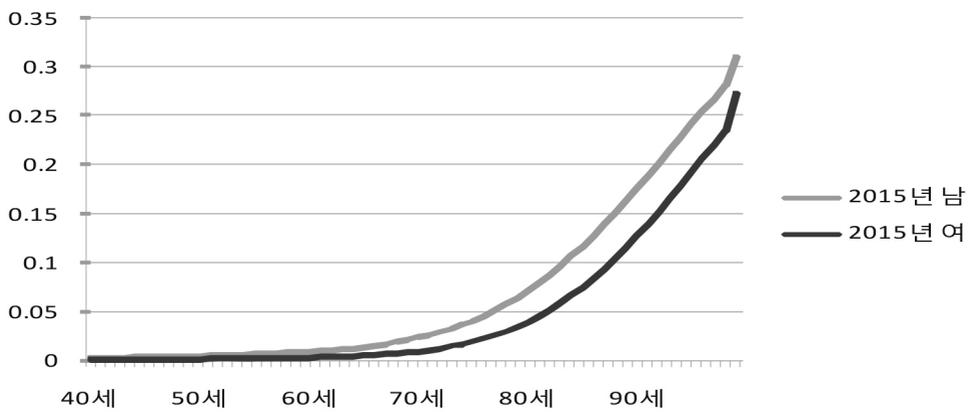


1. rint : 이자율, rinc : 임금상승률, cpi : 소비자물가변동률, rgdp :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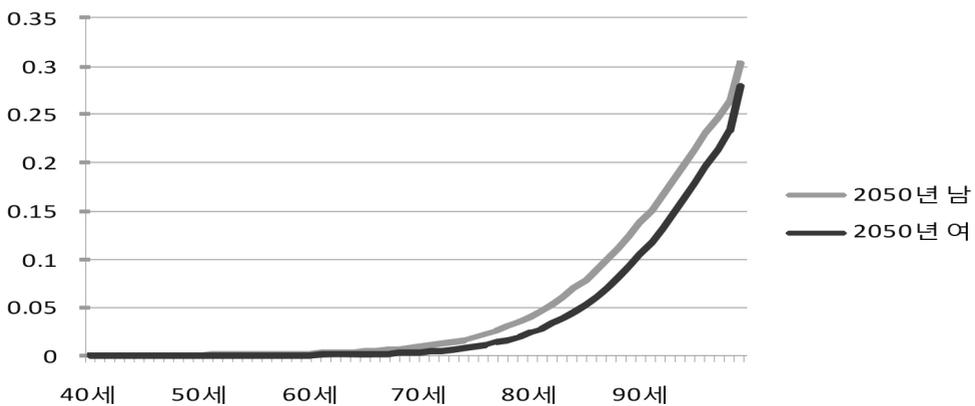
다. 생명표

연금수급자의 사망률 등에 사용되는 생명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생명표를 사용하였다. 사학연금가입자와 일반 국민의 생명표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한 제도 개선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국민생명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 국민생명표 (2015년)



[그림 3] 국민생명표 (2050년)



라. 사학연금 가입자수

사학연금 가입자수는 사학연금공단이 작성한 2016년 사학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사용된 가입자수 가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학연금 가입자의 탈퇴율이 사학연금공단에서 가정한 탈퇴율과 상이하므로 매년도의 퇴직자수는 상이하고, 입직자수는 공단의 가입자수 추정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직자수를 역으로 추산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입자수는 공단과 동일하지만, 퇴직자수와 입직자수는 다소 차이가 난다.

〈 표 1〉 가입자 가정

(단위: 명)

연도	가입자수	퇴직자수	입직자수
2016	286,933	22,287	25,441
2020	294,402	24,191	27,069
2025	307,213	26,695	27,690
2030	312,316	27,067	27,352
2035	314,207	26,839	26,611
2040	312,072	26,310	25,127
2045	305,559	25,319	23,853
2050	295,996	24,175	21,707
2055	281,654	23,301	20,350
2060	268,458	22,519	20,084
2065	257,612	22,057	20,076
2070	248,110	21,401	19,511
2075	238,841	20,564	18,730
2080	229,555	19,609	17,672
2085	219,299	18,508	16,546
2090	211,599	17,879	16,546
2095	205,969	17,552	16,546
2100	201,633	17,326	16,546

마. 탈퇴율 등 기초변수

사학연금의 임금구조, 승급률, 연금선택률, 유유족률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학연금 통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 사용하였다.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2016)에서 사용된 가정 등을 다수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2. 재정효과 분석

가. 법 개정이전 재정전망 결과

2015년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학연금 재정전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총지출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는 14%수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차이가 급속히 벌어져 2036년경이 되면 사학연금 적립기금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공단에서 추계한 재정전망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생명표를 사학연금 생명표가 아닌 국민생명표를 사용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² 장기적으로 갈수록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수지차액의 크기가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전 체계하에서는 수지균형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사학연금 재정수지 전망 (법 개정 전)

(단위 : 10억 원)

연도	총지출	총수입	부담금수입	수지차액	적립기금
2016	2,120	3,016	2,324	896	16,894
2020	3,018	3,674	2,752	656	19,850
2025	4,597	4,385	3,426	-212	20,775
2030	6,509	4,882	4,217	-1,626	15,731
2035	8,673	5,260	5,163	-3,413	2,488
2040	11,051	6,221	6,221	-4,830	-
2045	13,501	7,338	7,338	-6,162	-
2050	16,237	8,469	8,469	-7,768	-
2055	20,126	9,487	9,487	-10,639	-
2060	25,145	10,546	10,546	-14,599	-
2065	31,243	11,709	11,709	-19,534	-
2070	38,267	13,083	13,083	-25,184	-
2075	45,908	14,671	14,671	-31,237	-
2080	53,893	16,513	16,513	-37,380	-
2085	62,026	18,560	18,560	-43,466	-
2090	70,327	20,957	20,957	-49,371	-
2095	79,100	23,748	23,748	-55,352	-
2100	88,858	26,985	26,985	-61,873	-

※ 적립기금 소진연도 : 2036년

2. 정치한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추계한 사학연금공단의 2016년 추계가 공식통계이며, 본 재정추계 결과는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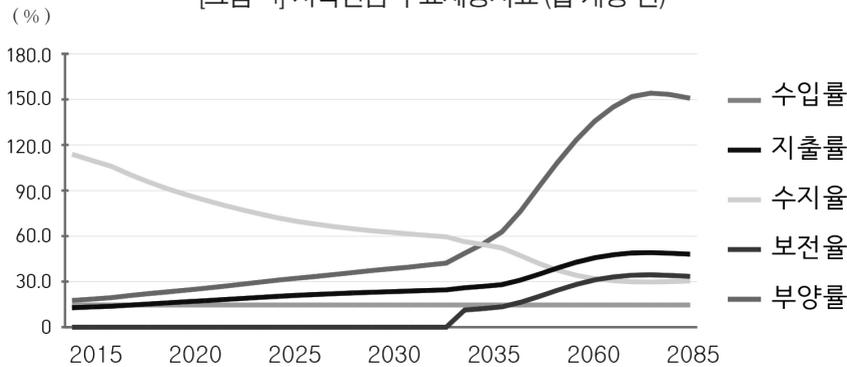
법 개정 이전의 제도 하에서 주요 재정지표³를 보면, 수입률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지출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2085년의 보전율이 34%로 증가되고 부양율은 1.51배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3〉 재정관련 주요지표전망(법 개정 전)

(단위 : %)

연도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부양률
2016	14,625	13,346	109,586	-	18,519
2020	14,625	16,041	91,172	-	23,235
2025	14,625	19,628	74,512	-	29,716
2030	14,625	22,575	64,786	-	36,037
2035	14,625	24,565	59,536	-	42,241
2040	14,625	25,980	56,295	11,355	48,665
2045	14,625	26,907	54,354	12,282	54,946
2050	14,625	28,038	52,161	13,413	62,763
2055	14,625	31,027	47,136	16,402	76,373
2060	14,625	34,869	41,943	20,244	92,716
2065	14,625	39,023	37,478	24,398	108,665
2070	14,625	42,777	34,189	28,152	123,351
2075	14,625	45,764	31,958	31,139	135,734
2080	14,625	47,731	30,641	33,105	145,064
2085	14,625	48,876	29,923	34,251	151,830
2090	14,625	49,080	29,799	34,455	154,108
2095	14,625	48,714	30,023	34,089	153,281
2100	14,625	48,158	30,369	33,533	151,029

〔그림 4〕 사학연금 주요재정지표(법 개정 전)



3. 수입률은 연금보험료 부과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및 기타 수입 (기금운용수익 제외), 지출률은 연금보험료 부과소득 대비 총지출, 수지율은 총지출 대비 연금보험료 및 기타 수입 임.

나. 법 개정 이후 재정전망 결과

법 개정 이후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은 증가되고 총지출은 감소되기 때문에 적립기금 소진연도가 2055년으로 늦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이전 법기준에서의 기금소진연도가 2036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립기금 유지기간이 19년 연장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학연금공단의 재정추계에 따른 기금소진연도인 2046년도 보다 9년이 더 길게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적용된 생명표의 차이로 본 추계모형에서도 사학연금 생명표를 사용하면 기금소진연도가 2051년으로 산정된다(사학연금 생명표를 적용할 경우 개정 전 제도 기준으로는 2034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개정 전후 제도간 소진연도 차이는 15년이 되어 공단 연금모형기준으로 13년 차이가 나는 것과 근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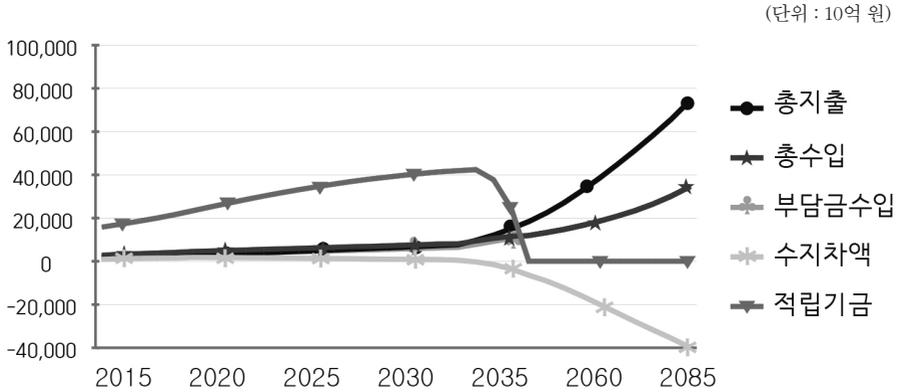
〈표 4〉 재정수지전망 (법 개정후)

(단위 : 10억 원)

연도	총지출	총수입	부담금수입	수지차액	적립기금
2016	2,062	3,310	2,603	1,248	17,246
2020	2,755	4,542	3,453	1,787	23,411
2025	4,219	5,747	4,282	1,528	31,700
2030	5,877	6,915	5,306	1,038	38,014
2035	7,622	8,129	6,498	507	41,959
2040	9,681	9,407	7,833	-273	42,404
2045	12,092	10,615	9,226	-1,477	37,758
2050	15,053	11,554	10,648	-3,499	24,664
2055	18,403	11,969	11,969	-6,434	-
2060	22,406	13,321	13,321	-9,085	-
2065	27,168	14,816	14,816	-12,352	-
2070	32,619	16,570	16,570	-16,049	-
2075	38,540	18,585	18,585	-19,955	-
2080	44,800	20,902	20,902	-23,898	-
2085	51,318	23,441	23,441	-27,877	-
2090	58,122	26,443	26,443	-31,679	-
2095	65,391	29,987	29,987	-35,404	-
2100	73,479	34,122	34,122	-39,356	-

※ 적립기금 소진연도 : 2055년

[그림 5] 재정수지전망 (법 개정후)



법 개정 이후 주요 재정지표를 보면 2085년도의 수입률은 18.8% 수준으로, 지출률은 41.2% 보전율은 22.4%가 된다. 부양률은 오히려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표 5> 재정관련 주요지표전망 (법 개정 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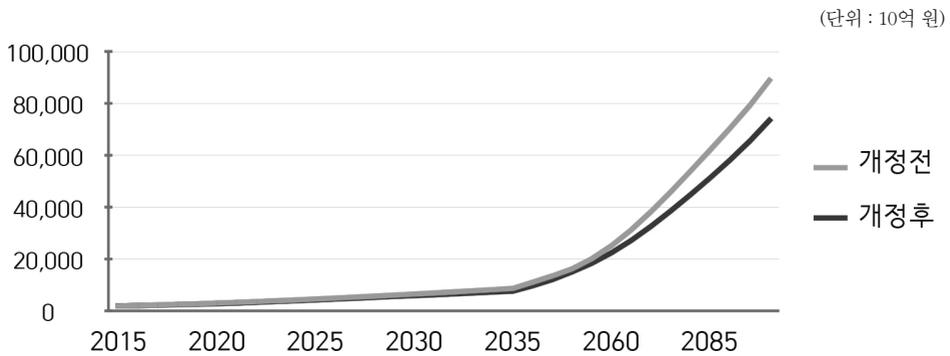
연도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부양률
2016	16,714	13,244	126,208	-	18,617
2020	18,804	14,999	125,365	-	23,821
2025	18,804	18,525	101,503	-	30,739
2030	18,804	20,824	90,296	-	36,904
2035	18,804	22,056	85,254	-	42,562
2040	18,804	23,241	80,908	-	49,351
2045	18,804	24,643	76,303	-	57,442
2050	18,804	26,583	70,735	-	67,930
2055	18,804	28,911	65,039	10,108	82,623
2060	18,804	31,628	59,453	12,824	99,556
2065	18,804	34,480	54,534	15,677	115,895
2070	18,804	37,017	50,797	18,213	130,809
2075	18,804	38,995	48,221	20,191	143,294
2080	18,804	40,303	46,656	21,499	152,669
2085	18,804	41,165	45,679	22,361	159,522
2090	18,804	41,331	45,496	22,527	161,840
2095	18,804	41,004	45,858	22,200	161,014
2100	18,804	40,492	46,438	21,688	158,736

다. 법 개정의 재정 효과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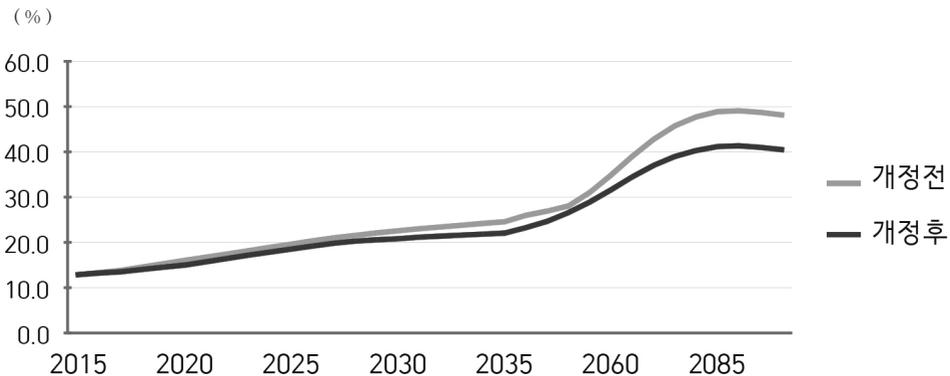
1) 총지출 비교

법 개정 이후 총지출의 개선효과는 비교적 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지급률의 조정 (1.9%→1.7%)이 있었지만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효과가 발생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60세→65세)도 2010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2009년 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액상으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비율상으로 나타낸 지출률을 비교하여 보면, 장기적으로 0.48에서 0.40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총지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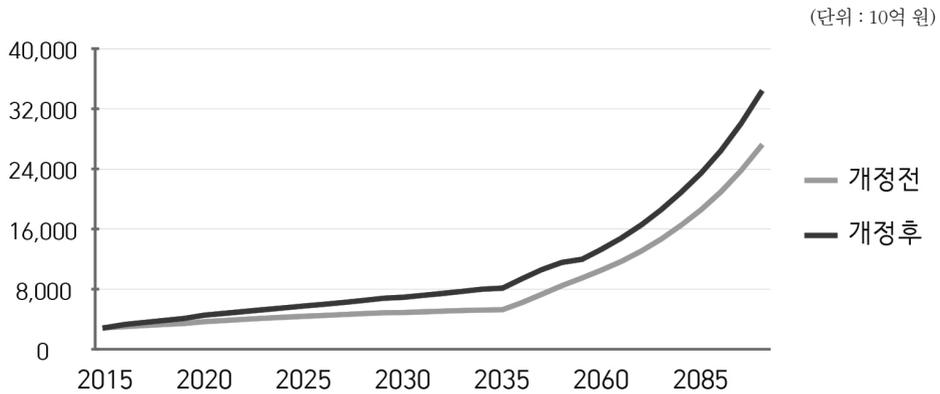
[그림 7] 지출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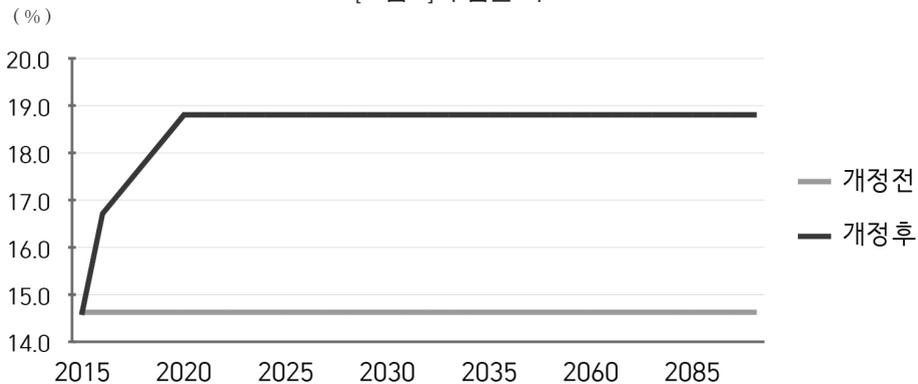
2) 총수입 비교

법 개정 이후 총수입의 개선효과는 총지출의 개선효과와는 달리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금보험료 4%를 인상한 효과가 초반부터 나타나서 비교적 일정하게 그 효과가 유지되는 모습이 총수입 금액상으로는 수입률 지표상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급여율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안정화 방안으로는 일단 연금보험료 수입의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금보험료의 인상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⁴

[그림 8] 총수입비교



[그림 9] 수입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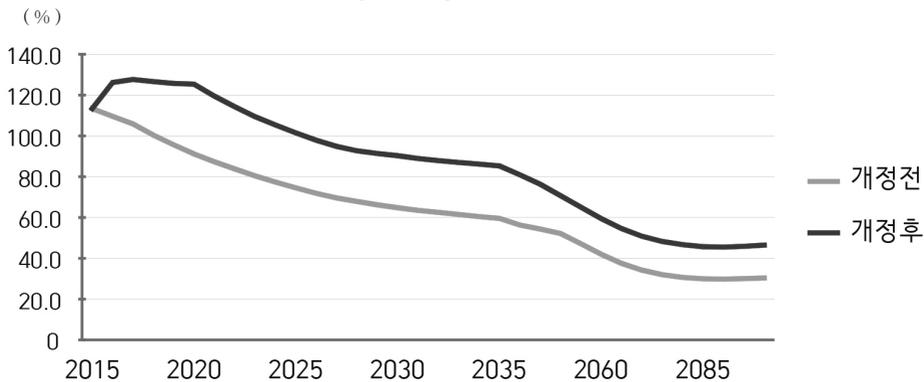


4. 보험수리적 수지균형보험료를 초과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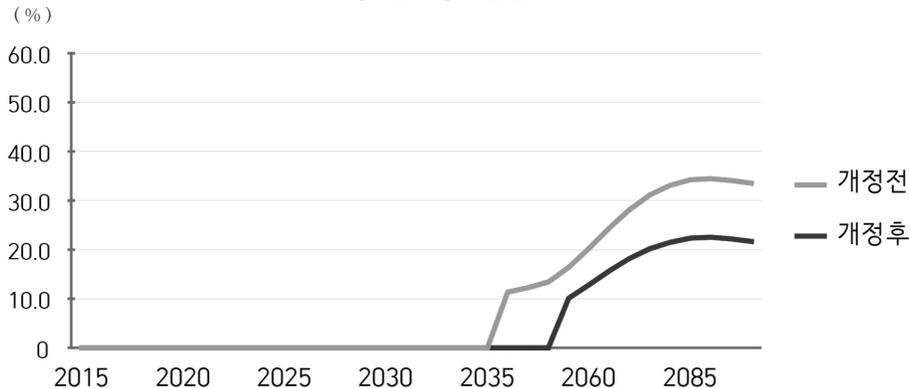
3) 재정수지 비교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사학연금의 경우 수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지율 상태 자체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반기보다는 중반기의 수지율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효과에 따른 것이다. 2009년 법 개정이 2010년 이후 가입자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을 그 이전 가입자에게도 부담이 고루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전율도 수지율만큼 개선된 효과를 보여준다. 보전율이 낮아졌지만 낮아진 상태도 20%를 넘는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10] 수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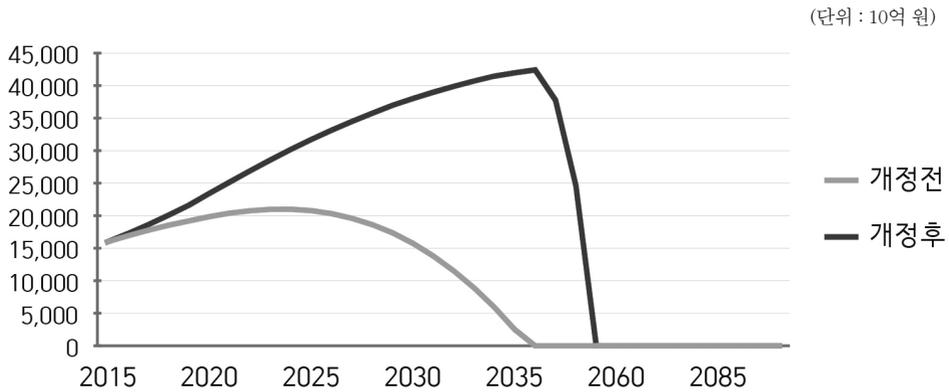
[그림 11] 보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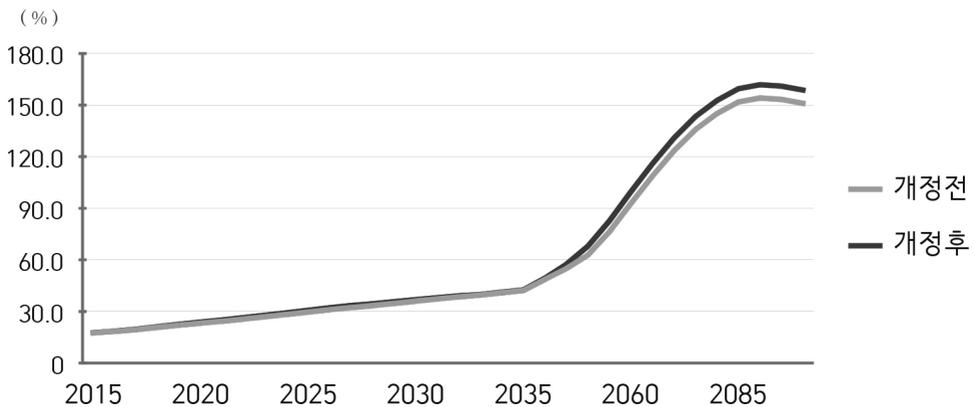
4) 적립기금 비교

사학연금 제도 개혁효과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는 역시 적립기금의 추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제도 개혁이전에도 적립기금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번의 연금개혁으로 적립기금의 소진연도도 대폭 연기되었다. 개혁이전에는 2036년 소진 전망에서 2055년 소진 전망으로 늦추어졌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연도와 거의 동일한 시기 까지 사학연금기금이 존치된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부양률 측면에서는 연금 수급가능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어지면서 미소하게 높아졌다.

[그림 12] 적립기금 비교



[그림 13] 부양률 비교



제도 개혁의 수단별로 재정효과를 분석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연금보험료 인상효과 (14%→18%)를 보면, 연금보험료만 인상할 경우 적립기금 소진연도가 2047년으로 개정 이전 소진연도 2036년에 비하여 11년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연금 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에 초점에 두어진 것과 달리 이번 연금개혁에는 지출 영역의 개혁이 포함된 것으로 감안하면 연금보험료 상향조정의 기금소진연도 측면에의 영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금보험료 인상효과는 비교적 단기에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지출면의 조정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남에 따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재정수지전망 (연금보험료율 조정효과)

(단위 : 10억 원)

연도	총지출	총수입	부담금수입	수지차액	적립기금
2016	2,130	3,362	2,656	1,232	17,230
2020	3,045	4,600	3,538	1,555	22,846
2025	4,633	5,770	4,404	1,137	29,566
2030	6,551	6,816	5,422	265	32,954
2035	8,723	7,854	6,639	-869	31,256
2040	11,110	8,850	7,998	-2,260	22,931
2050	16,314	10,889	10,889	-5,425	-
2060	25,241	13,560	13,560	-11,681	-
2070	38,390	16,821	16,821	-21,568	-
2080	54,047	21,232	21,232	-32,816	-
2090	70,521	26,944	26,944	-43,577	-
2100	89,113	34,696	34,696	-54,418	-

※ 적립기금 소진연도 : 2047년

〈표 7〉 재정관련 주요지표전망 (연금보험료율 조정효과)

(단위 : %)

연도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부양률
2016	16,714	13,406	124,681	-	18,519
2020	18,804	16,184	116,184	-	23,235
2025	18,804	19,780	95,063	-	29,716
2030	18,804	22,722	82,756	-	36,037
2035	18,804	24,708	76,103	-	42,241
2040	18,804	26,119	71,993	-	48,665
2050	18,804	28,172	66,746	9,368	62,763
2060	18,804	35,002	53,722	16,198	92,716
2070	18,804	42,914	43,817	24,110	123,351
2080	18,804	47,867	39,283	29,063	145,064
2090	18,804	49,215	38,207	30,411	154,108
2100	18,804	48,296	38,934	29,492	151,029

연금지급률 조정효과 (1.9%→1.7%)를 보면, 기금소진연도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년 소진). 그러나 급여지출의 감소효과는 뚜렷이 나타났다. 2085년 기준 지출률은 법개정 이전에는 48.8%이었으나 법 개정이후에는 44.0% 수준으로 낮아져 보험료 4.8%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지급률의 인상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금소진연도가 20년정도 남은 사학연금 재정 상황에서는 기금소진 연도상으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적 지출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표 8〉 재정수지전망 (연금지급률 조정)

(단위 : 10억 원)

연도	총지출	총수입	부담금수입	수지차액	적립기금
2016	2,120	3,016	2,324	896	16,894
2020	3,016	3,675	2,752	659	19,854
2025	4,581	4,388	3,426	-193	20,831
2030	6,452	4,894	4,217	-1,557	16,017
2035	8,535	5,296	5,163	-3,239	3,409
2040	10,775	6,221	6,221	-4,554	-
2045	13,019	7,338	7,338	-5,681	-
2050	15,456	8,469	8,469	-6,987	-
2060	23,284	10,546	10,546	-12,737	-
2070	34,804	13,083	13,083	-21,721	-
2080	48,628	16,513	16,513	-32,115	-
2090	63,288	20,957	20,957	-42,332	-
2100	79,928	26,985	26,985	-52,942	-

※ 적립기금 소진연도 : 2036년

〈표 9〉 재정관련 주요지표전망 (연금지급률 조정)

(단위 : %)

연도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부양률
2016	14.625	13.346	109.587	-	18.519
2020	14.625	16.031	91.232	-	23.235
2025	14.625	19.557	74.781	-	29.716
2030	14.625	22.377	65.358	-	36.037
2035	14.625	24.176	60.494	-	42.241
2040	14.625	25.332	57.734	10.707	48.665
2045	14.625	25.947	56.366	11.322	54.946
2050	14.625	26.690	54.796	12.065	62.763
2060	14.625	32.288	45.295	17.663	92.716
2070	14.625	38.906	37.591	24.280	123.351
2080	14.625	43.067	33.959	28.442	145.064
2090	14.625	44.167	33.113	29.542	154.108
2100	14.625	43.318	33.762	28.693	151.029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한 (60세→65세) 효과 역시 적립기금 소진연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2040년경의 지출률이 24.5%로 나타나 법 개정이전의 26.1%보다 낮아져 연금보험료 1.6% 상당의 조정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이전 가입자는 이미 2009년법 개정으로 65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가입자를 중심으로 재정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표 10〉 재정수지전망 (지급개시연령 조정)

(단위 : 10억 원)

연도	총지출	총수입	연금보험료	수지차액	적립기금
2016	2,121	3,016	2,324	896	16,894
2020	3,020	3,674	2,752	654	19,845
2025	4,567	4,387	3,426	-180	20,817
2030	6,342	4,907	4,217	-1,436	16,303
2035	8,208	5,364	5,163	-2,844	5,158
2040	10,424	6,221	6,221	-4,203	-
2045	12,996	7,338	7,338	-5,658	-
2050	16,286	8,469	8,469	-7,816	-
2060	25,314	10,546	10,546	-14,768	-
2070	38,370	13,083	13,083	-25,287	-
2080	53,911	16,513	16,513	-37,398	-
2085	62,028	18,560	18,560	-43,468	-
2090	70,327	20,957	20,957	-49,371	-
2100	88,858	26,985	26,985	-61,873	-

※ 적립기금 소진연도 : 2036년도

〈표 11〉 재정관련 주요지표전망 (지급개시연령 조정)

(단위 : %)

연도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부양률
2016	14.625	13.347	109.575	-	18.573
2020	14.625	16.051	91.115	-	23.437
2025	14.625	19.499	75.005	-	29.761
2030	14.625	21.997	66.487	-	35.173
2035	14.625	23.248	62.909	-	39.901
2040	14.625	24.507	59.678	9.882	45.868
2045	14.625	25.901	56.464	11.276	52.912
2050	14.625	28.123	52.005	13.498	62.484
2060	14.625	35.104	41.663	20.479	92.715
2070	14.625	42.892	34.097	28.267	123.351
2080	14.625	47.746	30.631	33.121	145.064
2090	14.625	49.080	29.799	34.455	154.108
2100	14.625	48.158	30.369	33.533	151.029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2016년 이후 5년간 동결한 정책수단은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금 절대액은 아니지만 실질 가치를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금급여 삭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액 동결은 기금소진연도를 2년간 늦추는 단기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85년의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2〉 재정수지 전망(연금 5년 동결)

(단위 : 10억 원)

연도	총지출	총수입	연금보험료	수지차액	적립기금
2016	2,086	3,018	2,324	932	16,930
2020	2,806	3,704	2,752	898	20,490
2025	4,388	4,479	3,426	91	22,806
2030	6,315	5,040	4,217	-1,275	19,453
2035	8,508	5,478	5,163	-3,029	8,104
2040	10,926	6,221	6,221	-4,705	-
2045	13,419	7,338	7,338	-6,081	-
2050	16,194	8,469	8,469	-7,725	-
2060	25,141	10,546	10,546	-14,595	-
2070	38,267	13,083	13,083	-25,184	-
2080	53,893	16,513	16,513	-37,380	-
2085	62,026	18,560	18,560	-43,466	-
2090	70,327	20,957	20,957	-49,371	-
2100	88,858	26,985	26,985	-61,873	-

※ 적립기금 소진연도 : 2038년

〈표 13〉 재정관련 주요지표전망(연금 5년 동결)

(단위 : %)

연도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부양률
2016	14.625	13.131	11.138	0	18.519
2020	14.625	14.915	98.057	0	23.235
2025	14.625	18.736	78.059	0	29.716
2030	14.625	21.901	66.778	0	36.037
2035	14.625	24.098	60.689	0	42.241
2040	14.625	25.686	56.938	11.061	48.665
2045	14.625	26.745	54.683	12.120	54.946
2050	14.625	27.964	52.300	13.339	62.763
2060	14.625	34.864	41.949	20.239	92.716
2070	14.625	42.777	34.189	28.152	123.351
2080	14.625	47.731	30.641	33.105	145.064
2085	14.625	48.876	29.923	34.251	151.830
2095	14.625	48.714	30.023	34.089	153.281
2100	14.625	48.158	30.369	33.533	151.029

제4장 후생효과 분석

1. 기본가정 및 전제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 제도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익비와 소득대체율을 함께 분석하였다. 후생효과에 사용된 거시경제변수는 재정추계 모형과 동일하며, 생명표 역시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다만 수익비 계산시 일반적으로는 유족연금도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유족연금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남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⁵ 후생효과 계산시 시나리오는 가입기간별, 가입연도별, 가입시연령별, 소득수준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30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31세에 가입하여 60세에 퇴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가정하였다. 한편, 기준연도는 2015년으로 하였다.

〈표 14〉 수익비 및 소득대체율 분석 시나리오

(단위 : 세, 원)

번호	가입연도	가입연령	퇴직연령	가입시기준소득	비 고
1	2016	41	60	2,645,768	가입기간 20년
2	2016	31	60	2,042,663	가입기간 30년
3	2016	36	65	1,888,766	가입기간 30년
4	2016	31	60	3,063,995	소득 1.5배
5	2016	31	60	1,021,332	소득 0.5배
6	1990	31	60	266,031	1990년 가입
7	2000	31	60	807,631	2000년 가입
8	2010	31	60	1,747,841	2010년 가입
9	2015	31	60	1,983,168	2015년 가입
10	2016	31	60	2,042,663	2016년 가입
11	2020	31	60	2,301,267	2020년 가입
12	2030	31	60	3,144,130	2030년 가입

5. 본 논문에서는 수익비외에 소득대체율을 계산하고 있는바 소득대체율 계산시는 유족연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 목적상 유족연금을 제외하였다.

2. 분석 결과

후생효과 분석을 총괄하여 보면,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수익비는 장기적으로 0.6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5.2%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소득대체율은 퇴직직전 소득기준 대체율이기 때문에 전가입기간 평균소득대체율과는 차이가 있다.

〈표 15〉 연금수익비 비교

(단위 : 배)

	연금수익비		연금수익비(퇴직수당 포함)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1	1,727	1,255	2,010	1,477
2	1,933	1,428	2,244	1,671
3	1,884	1,391	2,209	1,644
4	1,933	1,270	2,244	1,513
5	1,933	1,980	2,244	2,224
6	2,868	2,745	3,237	3,099
7	2,426	2,077	2,732	2,342
8	1,867	1,454	2,167	1,696
9	1,925	1,434	2,235	1,677
10	1,933	1,428	2,244	1,671
11	1,957	1,421	2,274	1,668
12	1,961	1,366	2,281	1,615

〈표 16〉 소득대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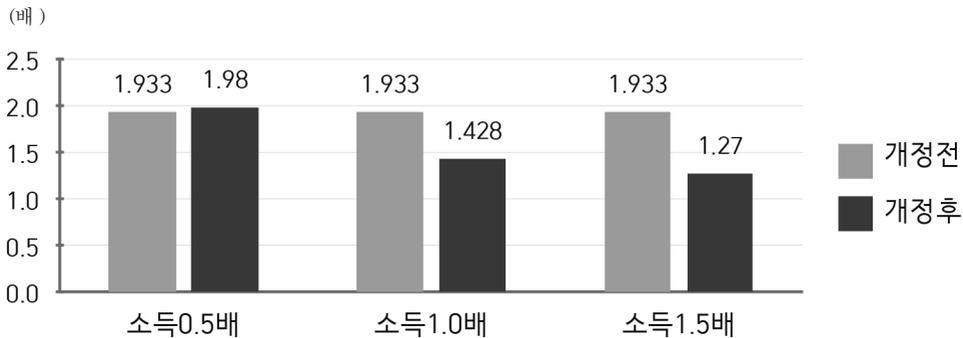
(단위 : %)

	소득대체율(연금)		소득대체율(연금+퇴직수당)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1	26.5	24.5	29.6	27.6
2	40.0	37.8	44.6	42.4
3	38.5	36.3	44.0	41.9
4	40.0	33.6	44.6	38.2
5	40.0	52.4	44.6	57.0
6	44.8	44.7	49.3	49.2
7	44.7	44.2	49.2	48.7
8	40.0	38.6	44.6	43.2
9	40.0	37.9	44.6	42.5
10	40.0	37.8	44.6	42.4
11	40.0	37.4	44.6	42.0
12	40.0	35.8	44.6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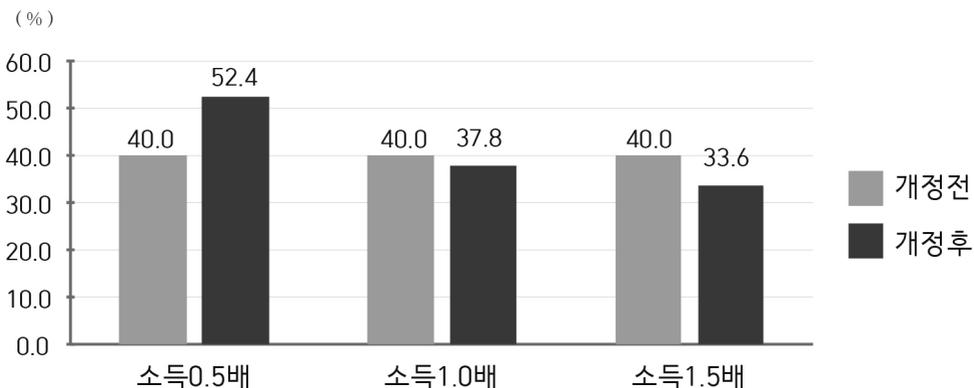
가. 소득수준별 비교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국민연금제도 수준의 소득재분배 요소를 급여산식에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의 수익비와 소득대체율의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수익비를 보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법 개정이전의 1.933에서 법 개정이후에는 1.428로 하락했다. 평균소득의 1.5배 소득자의 경우 1.933에서 1.270으로 하락폭이 더 커졌고 평균소득의 0.5배 소득자의 경우 1.933에서 1.98로 오히려 높아졌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법 개정이전의 40% 수준에서 법 개정이후에는 37.8%로 하락했다. 평균소득의 1.5배 소득자의 경우 33.6%로 낮아졌고, 평균소득의 0.5배 소득자의 경우 52.4%로 오히려 높아졌다. 퇴직수당을 포함한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 4.6% 포인트 높아진다.

[그림 14] 사학연금 수익비 비교 (소득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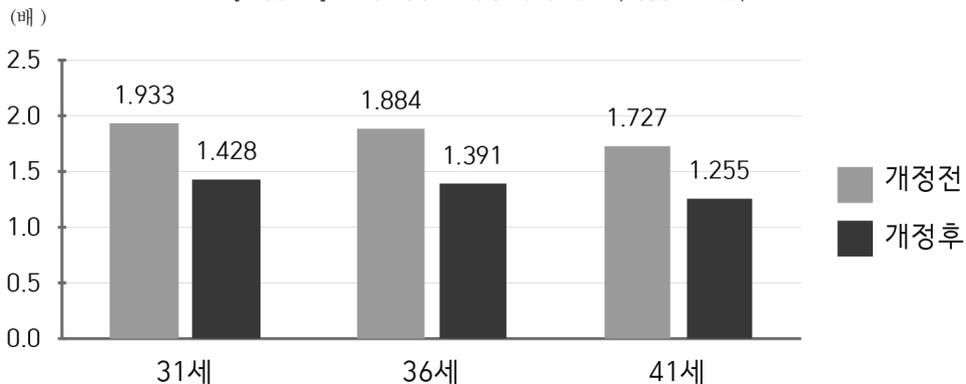
[그림 15] 사학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소득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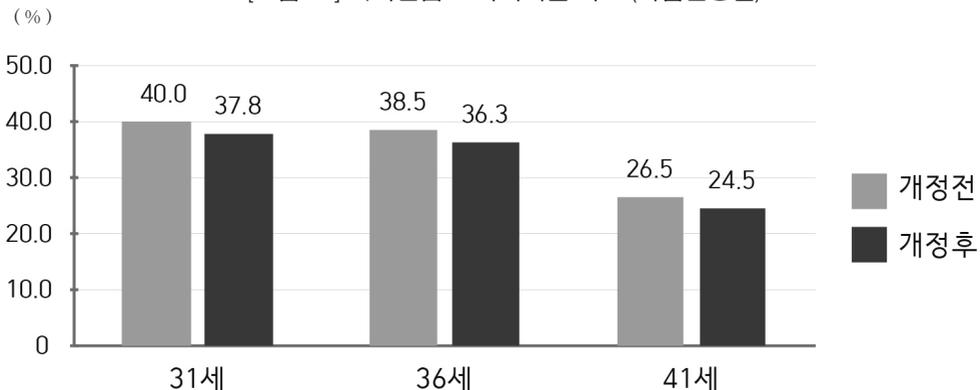
나. 가입연령별 비교

사학연금 가입연령에 따른 효과는 31세와 36세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41세에 가입하여 20년을 가입한 대상자도 함께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31세 입직하여 30년을 가입한 경우, 수익비는 1.933에서 1.428로 하락했다. 36세 입직하여 30년을 가입한 경우에는 1.884에서 1.391로 하락했다. 41세에 입직하여 20년 가입한 경우는 1.727에서 1.255로 하락했다. 소득대체율은 31세에서 입직한 경우 40%에서 37.8%였으나, 36세 입직자의 경우 38.5%에서 36.3%로 하락했다. 41세에 입직하여 20년 가입한 경우는 26.5%에서 24.5%로 하락했다. 31세 가입자보다는 36세 가입자의 수익비가 낮고 개혁후 효과도 더 큰 이유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영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사학연금 사학수익비 비교 (가입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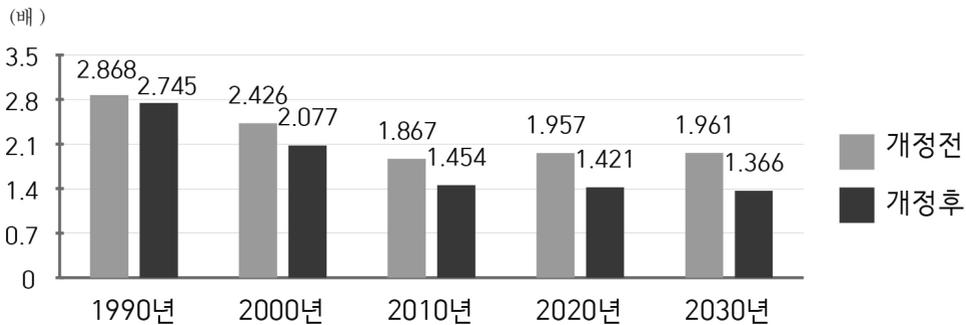
[그림 17] 사학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가입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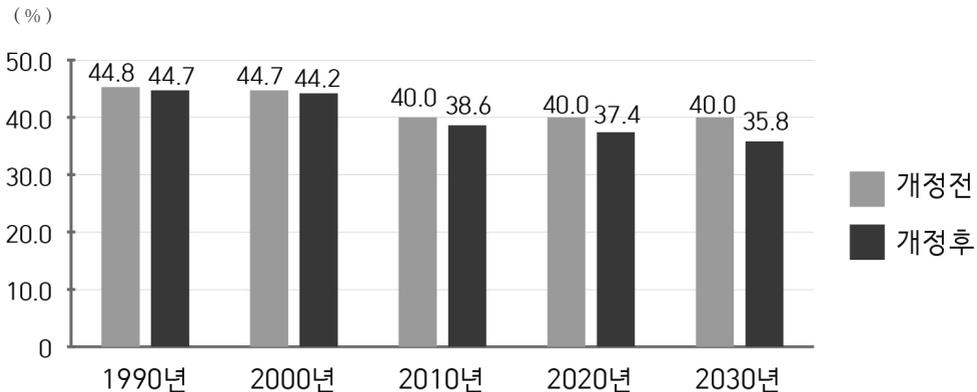
다. 가입연도별 비교

연금개혁의 효과는 가입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입연도별 수익비의 변화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학연금 가입연도에 따른 효과는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먼저 수익비를 보면, 1990년 가입자는 2.868에서 2.745로 하락했고, 2000년 가입자는 2.426에서 2.077로, 2010년 가입자는 1.867에서 1.454로, 2020년 가입자는 1.957에서 1.421로 2030년 가입자는 1.961에서 1.366로 하락했다. 소득대체율을 보면, 1990년 가입자는 44.8%에서 44.7%로 하락했고, 2000년 가입자는 44.7%에서 44.2로, 2010년 가입자는 40.0%에서 38.6%로, 2020년 가입자는 40.0%에서 37.4%로 2030년 가입자는 40.0%에서 35.8%로 하락했다. 미래 가입자일수록 수익비와 소득대체율 하락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2000년 가입자의 경우 감소효과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8] 사학연금 가입연도별 수익비 비교



[그림 19] 사학연금 가입연도별 소득대체율 비교



제5장 종합평가 및 증장기 개선과제

1.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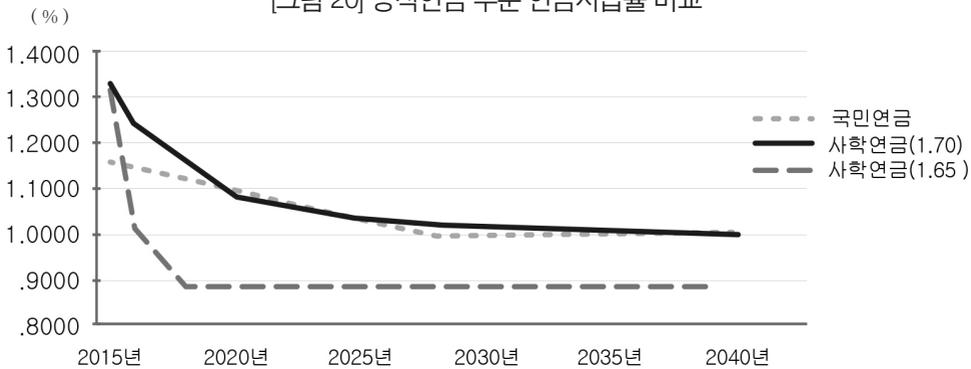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제도는 재정 안정성 측면,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측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보장성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세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혁 당시의 목표는 목표간 상충성(trade-off)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목표가 그만큼 희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목표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비중면에 있어서는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목표가 다른 목표보다는 중요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이 완전히 안정되는 만큼의 개혁은 달성하지 못했다.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재정추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13년 이상 최대 20년 정도를 연장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수준에 근접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타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제도와와의 형평성은 재정안정화 목표와 함께 연금개혁의 중요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적연금 제도에 있어서 완전한 재정안정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재정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가 되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제도 개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학연금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상당부분 국민연금 제도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급여수준에 있어서의 격차가 국민연금과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사학연금이 민간근로자의 법정 퇴직연금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과 현재 연금보험료 수준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배로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학연금의 급여수준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실상 국민연금제도에 접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급여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민간퇴직연금’과 ‘사학연금+퇴직수당’을 결합해서 비교하여야 한다. 민간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제도 도입기업의 임금승급지수에 따라서 실질적 급여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임금승급지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임금승급지수를 감안하여 분석하여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민간부문과 동일한 수준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를 연금보험료로 환산하면 10.96%이다.⁶ 이 중 퇴직수당에 반영된 것은 39%이고 나머지 61%는 사학연금 급여산식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민간퇴직연금에 비하여 퇴직수당으로 미반영된 부분을 연금보험료로 환산하면 6.6856%가 된다. 동 연금보험료를 사학연금 급여지급률로 환산하면 0.41785⁷가 된다. 따라서 사학연금 급여수준을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민간 퇴직연금 부족분을 공제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에 사학연금 지급률이 1.9에서 1.7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1.7에서 민간퇴직연금과 비교한 부족분 0.41785를 공제하면 사학연금 지급률은 1.28125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학연금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9%로 상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보험료 4.5%보다 4.5%가 높고 4.5%를 연금지급률로 환산하면 0.28125가 된다. 이를 다시 공제하면 사학연금지급률은 1.0% 수준이 되고 이는 정확하게 국민연금 지급률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사학연금의 지급률을 1.7% 보다 더 낮추는 것은 사학연금의 연금지급률을 국민연금 지급률보다 더 낮게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 개정된 사학연금지급률은 적정한 지급률이 된다.⁸

[그림 20] 공적연금 부분 연금지급률 비교



6.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7. 연금지급률 : 연금보험료율 = 10%:4%로 가정

8. - 민간 퇴직금의 연금보험료 환산 : 10.96%

· 퇴직수당 반영분 : 39% → 4.2744%, · 퇴직수당 미반영분 : 61% → 6.6856%

- 퇴직수당 미반영분 연금지급률 환산 : 0.41785

○ 공적연금부분 = 1.7 (20년 조정) - 0.41785 = 1.28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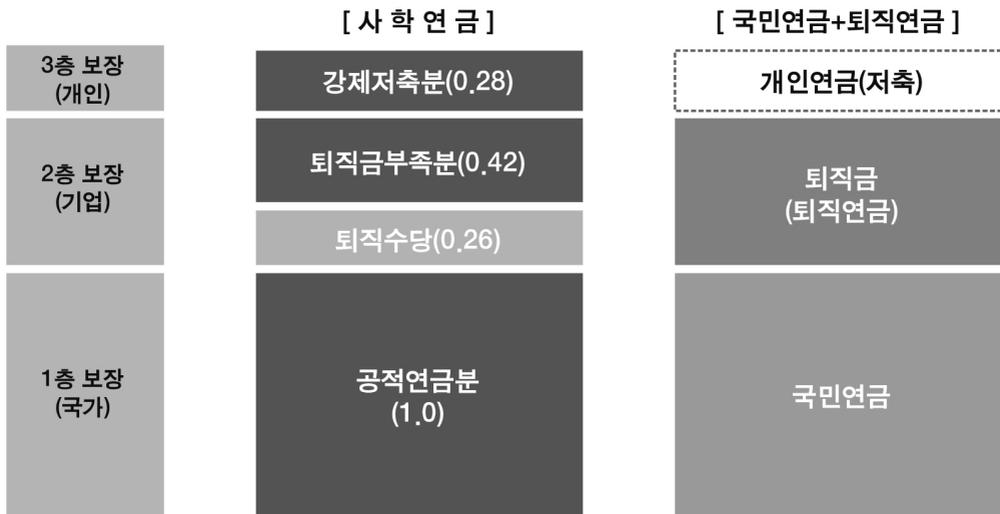
○ 연금보험료 차이의 연금지급률 4.5%(5년 조정) = 0.28125

○ 국민연금비교시 연금지급률 1.7 - 0.41785 - 0.28125 = 1.0000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에서는 사학연금 급여체계를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공적연금부분과 기업연금 부분으로 이원적으로 개편하지는 못했다. 이원적 체계를 각 연금부분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타 연금제도와와의 비교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부담주체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원체계로의 구조개혁을 하지 못한 점에 개혁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은 나름대로의 의미있는 연금급여체계로 분할하여 설명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비록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암묵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3층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제도로 설명가능하다. 즉, 민간의 퇴직연금 부족분과 국민연금가입자에 비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분을 제외하면 1층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공적연금부분(연금지급률:1.0)이 2층에는 사학연금 퇴직연금급여에 포함된 부분(연금지급률:0.42)과 퇴직수당(연금지급률:0.26)이 있고, 3층에는 강제 개인연금부분(연금지급률:0.28)으로 구성된 통합형 3층연금 시스템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21]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체계 비교



특히,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공적연금이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다만, 소득재분배가 사학연금 가입자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날 뿐 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제도간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생적 측면에서 사학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의 충실도 측면이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다소 약화된 점은 분명히 있다. 30년 가입기준으로 명목적 소득대체율이 57%에서 51%로 하향 조정되었다. 실질적 소득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직전소득대비 대체율이 인하된 것도 분명하다. 연금보험료가 상승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수익비도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대체율 측면에서 인하가 크지 않았다. 기 연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2016년 이후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된 것도 연금수급자의 수급권을 일부 훼손된 측면이 있지만 연금개혁에 따른 희생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 연금개혁의 효과가 완전히 이행되는 2036년에 이르러서도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인하가 급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성도 어느정도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은 재정안정성, 제도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성 측면에서 조화로운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현재 여건 하에서는 의미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중장기 개선과제

사학연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립기금이 소진되고 연금보험료를 인상하여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학연금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연금과 같이 자동적으로 적자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연금 개혁으로 사학연금의 재정상태가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가깝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추면서 공적연금 부분에서의 재정적 취약성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학연금 입장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학연금은 2050년경까지 지속가능성은 확보되었지만 그 이후의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의 제도 개선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재정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학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에 준하는 재정안정화는 이미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조치에 맞추어 사학연금도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학연금제도가 국민연금에 준하는 재정안정성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를 3% 인상하면 사학연금도 3% 추가 인상하는 식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특수성으로 사학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학법인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사학재정 부담의 증가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 현재는 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사학법인과 정부간의 재정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하, 「연금보험의 적정재정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2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4.
- ____,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 ____,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정책」,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14.
- ____, 석재은, 윤석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용하외,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산정 및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험학회, 1999.
- 김상호, 「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72호), 2012, pp.37-65.
- 문형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문형표 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pp.6-42.
-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2016. 1
- 유경준 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안전행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4.
- Andersen, T.M. (2005). Social security and longevity. CESifo Working paper 1577. Munich.
- Antolin, P. & Whitehouse, E.R. (2009). Filling the pension gap: Coverage and value of voluntary retirement saving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69. OECD. Paris.
- Börsch-Supan, A., Reil-Held, A. & Wilke, C.B. (2003). How to make a defined benefit system sustainable: The “Sustainability Factor” in the German benefit indexation formula. Discussion paper 37.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eing (MEA).
- Brunner, J.K. (1996). Transition from a pay-as-you-go to a fully funded pension system: The case of differing individuals and intragenerational fairnes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0(1), 131-146.
- Chomik, R. & Whitehouse, E.R. (2010). Trends in pension eligibility ages and life expectancy, 1950-2050.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105. OECD Publishing. Paris.

- European Commission (2009). The 2009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27 member states(2008-2060). *European Economy*, 2/2009.
- _____ (2001). Reforms of pension systems in the EU: An analysis of the policy op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73, 171-222.
- Hassler, J. & Lindbeck, A. (2004). Optimal actuarial fairness in pension systems. *Economics letters*, 55, 251-255.
- Jackson, R., Howe, N. & Nakashima, K. (2010).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Lassila, J. & Valkonen, T. (2000). Ageing, demographic risks and pension reform. Discussion paper 765,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Helsinki.
- Lindbeck, A. & Persson M. (2003). The gains from pension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LI, 74-112.
- Orszag, P.R. & Stiglitz, J.E. (2001). Rethinking pension reform: Ten myths about social security systems. In Holtzman, R. & Stiglitz, J.E. eds. *New ideas about old age security*. Washington, DC: World Bank, 17-56.
- Queisser, M. & Whitehouse, E.R. (2006). Neutral or fair? Actuarial concepts and pension-system design.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40*. OECD Publishing, Paris.
- _____, Whiteford, P. & Whitehouse, E.R. (2007).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in OECD countri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38(6), 542-568.
- Smeeding, T.M. (2001).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national comparis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 2001-11*. Boston college.
- Turner, J. (2007). Social security pensionable ages in OECD countries: 1949-2035.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0(1), 81-99.
- Whitehouse, E.R. (2007). Life-expectancy risk and pensions: Who bears the burden?.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60*, OECD Publishing, Paris.
- _____ (2009). Pensions, purchasing-power risk, inflation and indexation.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77*, OECD, Paris.

- _____, D'Addio, A.C., Chomik, R. & Reilly, A. (2009). Two decades of pension reform: What has been achieved and what remains to be don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34, 515-535.